







중소사업주건설팅

서울시에서 위촉한 노동권리보호관(노무사)이 서울소재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, 근로시간, 연차휴가 등 노무관리 관련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
제공 서비스

- ✔ 사업장 인사노무컨설팅: 근로계약서·임금명세서 작성, 임금·근로시간 관리 (최저임금, 시간외수당, 퇴직금 등 임금계산방법), 연차휴가 관리 등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자문의견서 제공
- ✔ 근로계약서, 임금명세서 등 인사관리 필수서식 작성 지원
- ✔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 부담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제·개정 정비 지원
- ✔ 사업장 필수 법정의무교육(직장내 성희롱,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), 근로기준법 교육 제공

지원 절차







신청방법

서울노동포털 홈페이지 (https://www.seoullabor.or.kr) 접속 · 중소사업주컨설팅 신청 페이지에서 · 사업자등록번호, 비밀번호 입력 컨설팅 동의,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제공 동의

컨설팅 신청서 양식으로 이동 홈페이지상 컨설팅 신청서 양식란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첨부하면 접수완료 전화문의 070-4610-2132

※ 유선상 중소사업주 컨설팅 신청 불가합니다.





중소사업주 건설팅

노무관리 관련 무료 컨설팅

자주묻는질문(FAQ)

- ② 노무사와 유료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건가요?
- ⚠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에게 제공받는 인사노무컨설<mark>팅은 전액</mark> 서울시·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으로 지원됩니다(무료). 지원된 노무사는 본 컨설팅과 관련하여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급하는 수당 이외에 사업주로부터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청구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됩 니다.



- @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 작성 지원이 가능한가요?
- ▲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제·개정컨설팅은 취업규칙 작성·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 다만, 사업 확장으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취업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는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. 이 경우 작성하신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하고,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전 제로 지원합니다.



- @ 법정의무교육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만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?
- ▲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근로자 인원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 교육은 노무사가 사업장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,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장 노동자 들도 함께 수강하는 교육입니다.

이 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온라인 서울노동아카데미(edu.labors.or.kr)를 통하 여 사업주 법정의무교육, 노동법률 관련 교육 등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 랍니다.

